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70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692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70622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12. 접수 제505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2018나62880)은 2019. 7. 12. “D는 원고에게 178,4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대여금 판결은 2019. 7. 30. 확정되었다.

나. E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나22830)에서 2019.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손해배상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E에게 1억 7,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일자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D에 대한 약정금 채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0247, 광주지방법원 2018나62880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 중 위 1)항 기재 돈 및 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0247, 광주지방법원 2018나62880 사건의 확정일자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2017가단80247, 2018나62880 사건의 확정일자로 양도하고, 채무자인 D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

다. E는 2019. 1. 30.경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F의 사실혼 배우자, F은 피고 C의 오빠)은 2017.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16.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D의 배우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8. 10. 10.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B,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D의 피고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하여, 2019. 10. 11.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B,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D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갖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C은 2020. 1.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근저당권자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B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2인 2,5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이다.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판결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D의 피고 B을 대위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각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이, 손해배상 조정에 의하여 원금 8,419,178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았는데 원고가 2020. 3. 25.경 이 사건 공탁금 2,5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은 손해배상 조정에 따른 양도로 2019. 7. 30. 기준 80,446,583원(2019. 7. 30. 기준 대여금 판결 채권액 256,786,747원 - 손해배상 조정에 따른 양도액 176,340,164원)이 남게 되고 위 잔액에 대하여 대여금 판결에 따라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피고들은 손해배상 조정에 따라 대여금 판결 채권 중 원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19. 7. 30.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양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해배상 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양도 대상 채권은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2020. 3. 25. 2,5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은 2020. 3. 25. 기준 68,054,277원(= 80,446,583원 + 12,607,694원(80,446,583원에 대한 2019. 7. 31.부터 2020. 3. 25.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5,000,00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은 그 일부가 여전히 존재한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모두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점, D와 피고 B의 관계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만으로는 D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D가 채권 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D에게 집행될 다른 재산이 있고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증거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목 록

1. 순천시 G 전 1,949㎡
2. 순천시 H 전 5㎡. 끝.